

계룡시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198 호
의결년월일	2005. 5. . (제 15 회)

제출일자	2005. 4. .
제출자	계 룡 시 장

1. 제정이유

- 계룡시공립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24조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위탁함에 있어 그 운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립보육시설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나. 보육시설 관장 및 수행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및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5조).
- 라.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및 정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7조).
- 마.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바. 지원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시행령

계룡시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제2항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위탁함에 있어 그 운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규정한 공립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계룡시에서 시설비 전액을 투자한 보육시설과 계룡시와 공동투자한 법인, 단체, 개인이 그 재산 일체를 계룡시에 기부채납한 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업무)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 및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 실시
2.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시설물의 상태유지 및 보수
4. 기타 보육목적 달성업무 및 영유아보육사업

제4조 (운영위탁) ①보육시설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계룡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③공동투자한 보육시설의 운영은 투자한 당해 법인, 단체, 개인이 일정기간동안 운영자가 된다.

제5조 (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법인, 단체, 개인이 계룡시와 공동투자한 보육시설은 10년으로 한다.

②시장이 운영위탁자에 대한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종사자 임면) 시설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탁단체에서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위탁단체에서 임면하되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종사자의 정년)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65세까지, 기타 종사자는 58세까지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동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 정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재산을 보육시설의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보육시설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사업을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 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원 및 비용부담) ①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받은 공유재산은 무상대여 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보육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일체를 계통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발 취)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7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2조 (보고와 검사)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